

2024년도 기술혁신 기반 전북특구기업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구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4년 기술혁신 기반 전북특구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I 세부사업 구성 및 사업별 담당 안내

■ 기술혁신 기반 전북특구기업 지원사업 공고대상

① 혁신형 연구소기업 기획 및 육성사업	01
②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사업	10
③ 전북특구 수요기술 공동개발(링킹랩) 지원사업	19
④ INNO JB 기술금융 네트워크 운영사업	29
⑤ INNO JB 지역통합 네트워크 운영사업	37
⑥ 전북TBC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46

■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문 및 관련 서식(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다운로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공고기간(2024. 4. 19(금) ~ 2024. 5. 20(월)) 및 사업별 접수기간

사업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혁신형 연구소기업 기획 및 육성사업	'24. 04. 19.(금) ~ '24. 05. 20.(월)	'24. 05. 13(월) ~ '24. 05. 20.(월), 15:00까지
②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사업	'24. 04. 19.(금) ~ '24. 05. 20.(월)	'24. 05. 13(월) ~ '24. 05. 20.(월), 15:00까지
③ 전북특구 수요기술 공동개발(링킹랩) 지원사업	'24. 04. 19.(금) ~ '24. 05. 20.(월)	'24. 05. 13(월) ~ '24. 05. 20.(월), 15:00까지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④ INNO JB 기술금융 네트워크 운영사업	`24. 04. 19.(금) ~ `24. 05. 20.(월)	`24. 05. 13(월) ~ `24. 05. 20.(월), 15:00까지
⑤ INNO JB 지역통합 네트워크 운영사업	`24. 04. 19.(금) ~ `24. 05. 20.(월)	`24. 05. 13(월) ~ `24. 05. 20.(월), 15:00까지
⑥ 전북TBC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24. 04. 19.(금) ~ `24. 05. 20.(월)	`24. 05. 13(월) ~ `24. 05. 20.(월), 15:00까지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접 수 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기술사업화팀

구분	사 업 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①	혁신형 연구소기업 기획 및 육성사업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②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사업	강보라 연구원	063-905-9742	kangbr@innopolis.or.kr
③	전북특구 수요기술 공동개발(링킹랩) 지원사업	주준식 연구원	063-905-9755	jjs8654@innopolis.or.kr
④	INNO JB 기술금융 네트워크 운영사업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⑤	INNO JB 지역통합 네트워크 운영사업	강보라 연구원	063-905-9742	kangbr@innopolis.or.kr
⑥	전북TBC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최진희 연구원	063-905-9743	skyhee10@innopolis.or.kr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II.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전북 보조금 관리조례” “전북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II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혁신형 연구소기업 기획 및 육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제품의 수요자 연계·실증이 가능한 연구소기업의 설립·육성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생태계 강화 및 기업·산업의 혁신성장 도모

□ 사업내용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수요자 연계 및 실증 가능한 특화기술 기반 혁신형 연구소기업 기획·육성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사업비 80백만원 이내

- 2개 수행기관 이내 선정, 최대 40백만원 한도(전북특자도 보조금 기준)
* 해당과제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전북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 ※ 단독 또는 기관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연구소기업 기술출자 컨설팅이 가능하며, 수요 및 실증 연계·기획을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기관 또는 기업을 전문기관으로 선정함

** 선정기관은 기획단계부터 설립 및 사업화전략을 수립·실행함으로써 우량 연구소기업 설립과 출자기관의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협약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획설립)** 설립 단계부터 질적으로 우수하고 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높은 연구소기업 기획 설립 **(2건 이상)**

* 아래 유형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수요·실증 기반 연구소기업 설립 필수

<혁신형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프로세스>

수요 및 실증기반 성장동력 확보	지역내 특화기술 활용도 제고	고부가가치 연구성과 유입 및 활용
------------------------------	----------------------------	-------------------------------

“수요·실증 연계 특화기술 기반 혁신형 연구소기업 기획 설립”	
<p align="center">① 고부가가치 기술출자</p> <p align="center">기술포트폴리오 설계를 통한 패키징 기술이전 등(1억원 이상)</p>	<p align="center">② 고자본 연구소기업</p> <p align="center">설립 자본금 3억원 이상 설립</p>
<p align="center">③ 특화기술 분야 연구소기업 설립</p> <p align="center">농·생명 바이오, 융·복합 소재부품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등 12대 전략기술분야</p>	<p align="center">④ 전북내 생산공장 구축, 대형수요처 확보</p> <p align="center">전북내 생산부지/공장 구축 또는 대·중견기업 등 수요처 확보를 통한 매출발생 등</p>

연구소기업의 후속성장 지원을 통한 성장 우수사례 창출
(국비사업 및 타기관 지원사업 연계, 전문가컨설팅 지원 등)

<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유형(예시) >

- ◆ **고부가가치 기술출자(기술가치 1억원 이상 기술출자)**
 - * 2차전지, 의료·의약·생명·바이오·신소재 등 시장성·기술력이 탁월하여 향후 높은 경제적 성과가 기대되는 딥테크 분야 고부가가치 기술 발굴 및 출자(필요시, 기술융복합 및 패키징 등을 통해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중대형 우수 IP 매칭 기획 연계)
 - ◆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보유한 고자본 연구소기업 설립(자본금 3억원 이상)**
 - ◆ **전북특구 특화분야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부합하는 연구소기업 설립**
 - * 농·생명 바이오, 융·복합 소재부품,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 ** 12대 국가전략기술 50대 세부중점기술 분야에 부합되는 연구소기업 설립
 - ◆ **전북내 생산부지/공장/설비를 확보·구축하거나, 대형수요처(대·중견기업 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한 연구소기업**
- ※ 상기 기획·설립 유형 중 **2건 이상 설립시 기획 유형의 중복제시가 불가함**

※ 제안기관 역량·추진전략에 따라 **신규 기획설립 유형을 기획하여 제시 가능**

- **(후속성장) 既** 설립된 전북특구 연구소기업에게 역량강화 및 사업화 후속성장지원을 통해 질적성장을 이룬 **성장사례 제시 (1건 이상)**
 - * R&BD과제, 시제품제작 지원 등 조기 사업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연계, 전북특구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멘토링/컨설팅 지원, 투자IR 및 투자자연계 등 후속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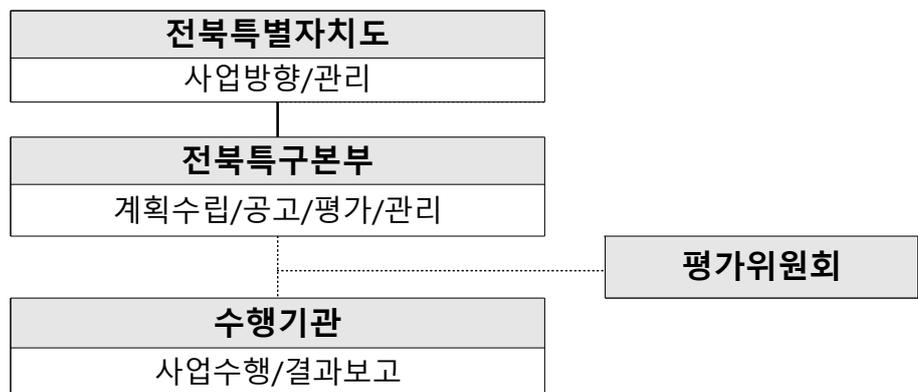
< 최소 지원성과 목표 >

핵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형 연구소기업 2개사 이상 설립(유형 중복제시 불가) ◦ 차년도 설립할 혁신형 연구소기업 후보 2개사 이상 발굴 ◦ 旣설립된 연구소기업의 후속성장을 통해 질적성장을 이룬 성장사례 1건 이상 제시
자율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기술 발굴, 후속성장 및 사업화지원 등 사업관련 자율성과 제시

- 보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전북특자도 보조금 지원
 -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비율은 보조금의 5% 이내 산정 가능
 -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참여인력에 한하여 현금 인건비 지급 인정
-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등
 - (평가위원회) 선정·결과평가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 추진절차 및 일정

< 절차 >	< 일정 >	< 주요내용 >
사업공고	'24. 4월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4. 5월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평가 및 선정	'24. 5월중	-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24. 6월중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종료 후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2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 사업 추진방안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상세 활동내역의 타당성	10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50)	○ 수행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수행기관 전문성, 수행조직/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계획 * 참여인력의 참여율, 경력 및 관련 실적의 수준	20
	○ 전북특화분야 이해도와 사업추진 전략, 사전 준비정도 - 기술발굴/연계, 수요기업 매칭, BM수립, 특히 portfolio 구축, 유망기술 인프라 등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체제 등	20
	○ 수행기관의 유관사업 수행 실적	10
추진일정, 예산운영, 성공가능성(30)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10
	○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10
	○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5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본사, 지사 등 전북지역 내 소재지를 보유한 주관연구개발기관(2점)

* 사업자등록증 등 공인된 서류를 통해 가점사항을 증빙해야하며 사업신청시 가점사항을 신청·증빙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함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규정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4. 04. 19.(금) ~ 2024. 05. 20.(월)
- 접수기간 : 2024. 05. 13(월) ~ 2024. 05. 20(월),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	○	○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	○	○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	○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	○	○	PDF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	○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5호	○	○	○	PDF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6호	○	○	○	PDF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원본대조필)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PDF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등)	서식 7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PDF
13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서식 8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PDF
14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9호	○	○	○	엑셀(Excel)
15	우대사항 확인서(가점 증빙포함)	서식 10호	○ (해당시)	-	-	PDF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6. 기타 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성과 지원내용 및 성과분석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요청시 사업수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2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특구 소재 기업 중 첨단기술기업 지정 컨설팅, 후속성장 지원 등을 통해 특구 내 혁신기업 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특구법 제9조에 따라 지정

□ 지원대상 : 수행기관 1개 선정 (컨소시엄 가능)

-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에 대한 컨설팅 및 성과 조사 분석 역량 등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해당 분야별 기관간 컨소시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협약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 80백만원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2. 수행내용 및 목표

□ 수행내용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후속성장 지원사업 프로세스》



- (기업 발굴) 특구기업의 보유특허, 경영분석, 제도홍보 등을 통해 지정·육성이 가능한 후보기업 발굴
- (기업컨설팅) 첨단기술기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산자부) 발급을 위한 특허, 회계 등 전문컨설팅 지원

- **(첨단기술기업 지정)** 첨단기술기업 지정 희망 예비기업 및 후보기업 대상 첨단기술기업 지정(재지정 포함) 3건 이상
 - 후보·지정기업의 상시소통 및 밀착상담을 통해 기업 현안파악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DB를 구축하여 맞춤형 애로해결 지원
- **(네트워크 운영)** 첨단기술기업 지정기업과 후보기업을 중심으로 협의회 구축·운영하여 정보교류, 정책제안 등 기업간 교류 활성화
- **(후속지원)** 특구사업 및 he기관 사업연계 지원, 제품 인증 등 후속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성장 지원
- **(성과조사·분석)** 세제혜택, 매출액, 고용, 시설, 투자 등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성과분석 실시

□ 핵심 성과목표

No	성과목표	성과 지표	목표
1	첨단기술기업 지정	◦ 첨단기술기업 지정 건수(신규 및 재지정 포함)	3건
2	후보기업 발굴	◦ 의향서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발굴된 기업 * 2년 이내에 첨단기술기업 지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	15건
3	기업DB구축	◦ 첨단기술기업 후보·지정기업의 기업관리카드 제작	30건
4	첨단기술기업 네트워크 운영	◦ 첨단기술기업 간 연계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운영	2회
5	성과 분석 및 조사	◦ 세액감면, 매출액, 고용, 연구개발비 투자 등 조사·분석 * 첨단기술기업 종로기업 포함 조사분석을 시행해야함	1식
6	후속지원	◦ 인증지원, 판로개척 등 기업 후속성장을 위한 지원	3건

*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24년 11월까지 2건을 완료 하여야 하며, 신규지정 1건 이상은 필수임

** 공고문에 제시된 목표 이외의 추가 목표(정량·정성)를 제시가능

□ 보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전라북도 보조금 지원

-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비율은 보조금의 5% 이내 산정 가능
-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참여인력에 한하여 현금 인건비 지급 인정
 - ※ 본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산정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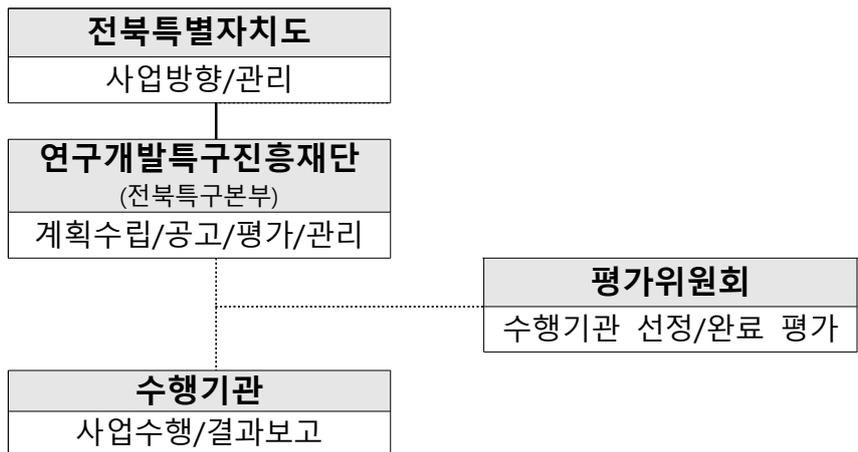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등
- (평가위원회) 선정·결과평가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 추진절차

< 절차 >	< 일정 >	< 주요내용 >
사업공고	'24. 4월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4. 5월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평가 및 선정	'24. 5월중	-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24. 6월중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종료 후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 (20점)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 지원의 필요성	10%
추진 전략 및 역량 (45점)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사전 준비정도	20%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20%
	○ 수행기관 컨설팅 추진 실적	5%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15점)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절성	5%
	○ 사후 관리 방안	10%
지원효과성 및 활용계획 (20점)	○ 지원을 통한 고용, 매출 등 성과 증대 효과성	10%
	○ 향후 성과물 활용 계획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합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5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본사, 지사 등 전북지역 내 소재지를 보유한 주관연구개발기관(2점)

* 사업자등록증 등 공인된 서류를 통해 가점사항을 증빙해야하며 사업신청시 가점사항을 신청·증빙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규정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4. 04. 19.(금) ~ 2024. 05. 20.(월)
- 접수기간 : 2024. 05. 13(월) ~ 2024. 05. 20(월),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	○	○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	○	○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	○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	○	○	PDF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	○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5호	○	○	○	PDF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6호	○	○	○	PDF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7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PDF
13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8호	○	○	○	엑셀(Excel)
14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서식 9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PDF
15	우대사항 확인서(가점 증빙포함)	서식 10호	○ (해당시)	-	-	PDF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강보라 연구원	063-905-9742	kangbr@innopolis.or.kr

6.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성과 지원내용 및 성과분석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요청 시 사업수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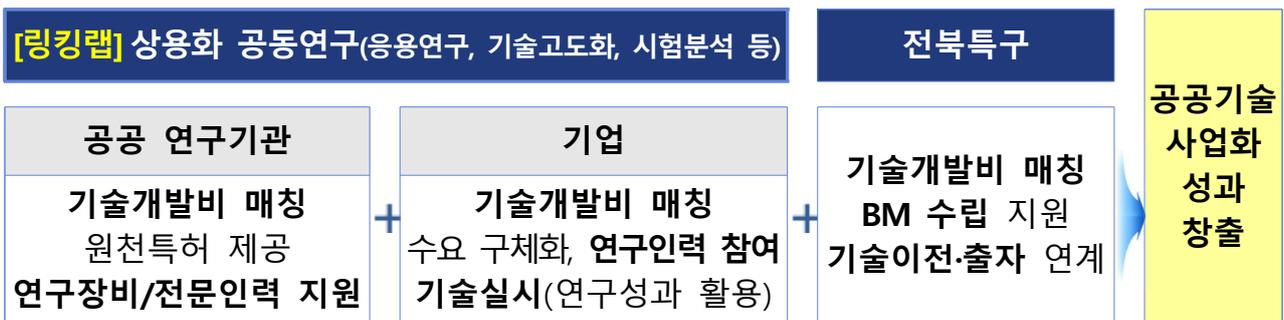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지원을 통해 수요기반형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 연구기관-수요기업간 공동Lab(링킹랩) 운영을 통해 상용화 기술 공동개발 및 이전·출자의 전주기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백만원

- * '24년도의 경우 컨소시엄별 100백만원을 지원하고, '25년도에 100백만원 지원예정 (단, '24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 지원대상 : 특구내* 수요기업(주관), 공공연구기관**(공동) 컨소시엄

- * 기업·연구기관 모두 전북특구내 소재 필수(확인방법 : www.eum.go.kr → 주소조회)

- ** 공공연구기관 범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기준

- ※ 본 사업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는 필수

□ 지원내용

- 연구기관내 **공동Lab(링킹랩)**을 구축*하고 기관과 기업의 연구인력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 → **추가기술개발, 기존기술 TRL 향상** 등
 - * 공동Lab 구축운영 필수 : 연구기관 내 독립된 공동기술개발 공간 확보, 참여 연구인력이 활용 가능한 연구기자재 및 설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연구기관 및 기업은 **보유 연구장비, 전문인력, 노하우** 등을 연계·**활용**하여 기술개발, 시험·분석 등을 공동 추진
 - * 공동연구로 개발된 기술(지재산 등)은 기관·기업 공동소유 원칙(기여도 비율 등은 기관-기업 협의로 정하되, 분쟁예방을 위해 '지재산에 대한 확약서' 제출 필수)
 - * 지재산 출원 전, 본 사업비를 활용한 IP-R&D전략 수립 필수
- 개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연계*** 및 사업전략, BM수립 지원
 - * 개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는 필수적으로 추진하되 , 사업기간내 개발기술 이전 완료가 불가할 경우 개발기술명, 기술이전조건, 기술이전일정 등 기술이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기한 '기술이전 확약서'를 사업종료 전 필수 제출해야함.
- 주관기업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IP R&D, 애로해결 컨설팅, 시험인증, 판로개척** 등 특구육성사업과 연계한 성장 지원

□ 보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 연차별 납부

구 분	총사업비		
	사업비	민간부담금(총사업비의 30%)	
		현 물	현 금
지원조건	총사업비의 70% 이상	민간부담금의 50%	민간부담금의 50%
<예시> 정부출연금 100백만원 기준			
과제지원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100,000천원	21,425천원	21,425천원	142,850천원

* 민간부담금은 연구기관-기업간 협의에 따라 현물·현금 분담 가능

□ 성과목표

- ※ 주관기업은 '공동연구개발내용'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업목표와 증빙자료(TRL 향상, 시험성적서, 특허 출원·등록, SW 등록, 시험인증, 기술이전계약서 등)를 필수 제시
- ※ IP R&D 전략 수립 계획 제시 필수
- ※ 개발기술 완료 후 기술이전(출자)의 구체적 추진계획 필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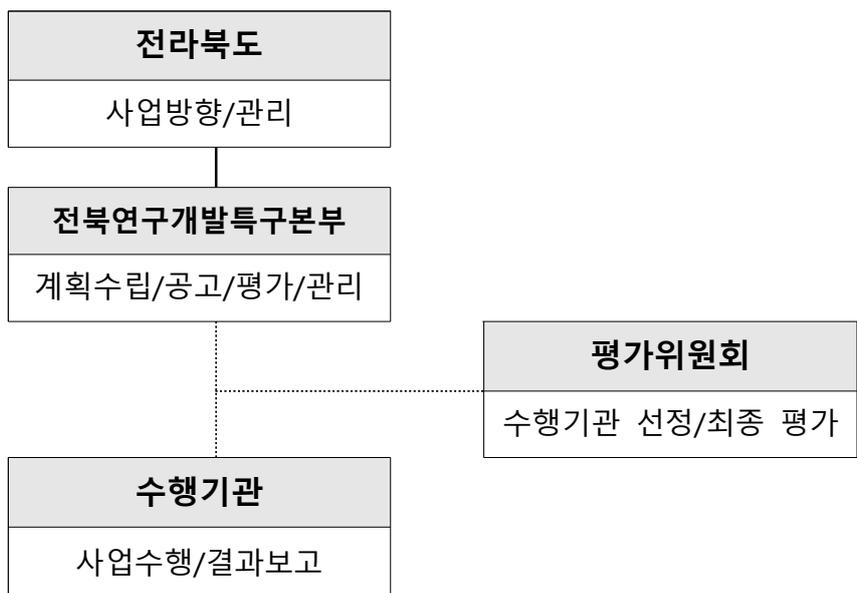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수행기업 과제 수행 및 전북특구본부 총괄 관리

-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등
- (평가위원회) 선정·결과평가
- (수행기관/컨소시엄) 공동Lab 구축, 기술개발, 시험·분석, 기술이전 등



□ 추진절차 및 일정

< 절차 >	< 일정 >	< 주요내용 >
사업공고	'24. 4월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4. 5월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평가 및 선정	'24. 5월중	-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24. 6월중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종료 후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20)	○ 공동연구 목표,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10
	○ 공동연구 필요성 및 협력계획	10
기술성(45)	○ 연구책임자 연구역량 및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15
	○ 기술유출방지, 기술보호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적정성	15
	○ 연구개발 기술과 사업화방안의 적정성	15
사업성(35)	○ 기대성과 및 상용화 방안의 적절성	20
	○ 사업화 추진 방법 및 기술의 우수성	15
합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5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유의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규정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4. 04. 19.(금) ~ 2024. 05. 20.(월)
- 접수기간 : 2024. 05. 13(월) ~ 2024. 05. 20(월),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	○	○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	○	○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	○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	○	○	PDF
6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	○	-	-	PDF
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	○	PDF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	○	○	PDF
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	○	○	PDF
10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서식 7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1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3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8호	○	-	-	PDF
14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9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5	전문연구사업자 증빙	-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6 (필수)	(별지)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 제 목록(과제수행 현황)	서식 10호	○	-	-	PDF
17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1호	○	○	○	엑셀(Excel)
18 (필수)	지식 재산권 배분 협약서·합의서 (실시권, 기술료 배분 등)	자율 양식	주관기관에서 취합 후 제출			PDF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준식 연구원	063-905-9755	jjs8654@innopolis.or.kr

6. 기타 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성과 지원내용 및 성과분석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요청시 사업수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과제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권리성 확보를 위해 과제의 연구 노트 작성 필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 전략분야 중심 투자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유망기업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으로 전북권 투자 생태계 강화

□ 사업내용

- 전북특구를 중심으로 '투자자 네트워크'와 '유망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북 투자 생태계 강화를 통한 투자 촉진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사업비 80백만원 (1개 이내 단독 또는 컨소시엄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투자자 네트워킹 및 투자자-기업간 네트워킹 운영 경험 및 역량을 보유한 기관·기업* 또는 컨소시엄

* 액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기술지주회사 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협약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투자자 네트워크)** 道출자 펀드 운영사 등 전북기업에 투자 가능한 투자자(AC, VC) 중심 네트워크 구성 및 유망기업 발굴·투자 연계* 추진

* 유망기업 중심 투자IR 개최 및 투자자(VC, AC 등)와 연계한 상담회 운영

- **(유망기업 네트워크)** 특화분야별 투자 유망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유망투자 기업간 투자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만남의 장 추진

* 투자기업 분석 정보 및 특화분야 전문투자자의 투자 관점 공유 등

< INNO JB 기술금융 투자 네트워크(안) >

투자자 네트워크	유망기업 네트워크	투자자-기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을 보유한 투자자 중심 운영 → AUM 등 투자 정보 공유 • 투자 유망기업 발굴·공유 및 후속투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유망기업 및 이노캠 창업기업 혁신성장 네트워킹 추진 • 산업별 투자전략 세미나 • 투자정보 공유 기반 기업간의 협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유망기업 심층 IR • 기업-투자자 1:1 상담회 • 투자IR 개최, 엔젤 펀드 연계 등
<p align="center">※ 사업제안 기관은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제시 가능</p>		

< 최소 지원성과 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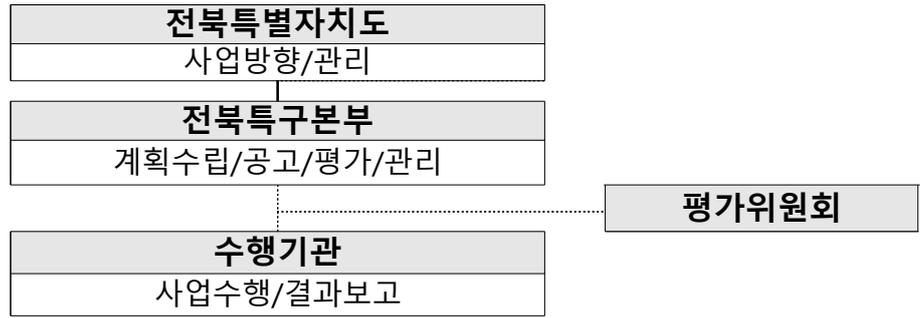
핵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4회 이상 추진 ◦ 투자 IR 및 투자 상담회 3회 이상 추진 ◦ 투자 유망 기업 네트워킹 구성 및 운영(특강, 학습형 네트워킹 등) 3회 이상 추진 ◦ 연계투자유치 실적 10억원 이상
자율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구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자율 지표 제시

- 보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전북특자도 보조금 지원
 -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비율은 보조금의 5% 이내 산정 가능
 -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참여인력에 한하여 현금 인건비 지급 인정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등
 - (평가위원회) 선정·결과평가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 추진절차 및 일정

< 절차 >	< 일정 >	< 주요내용 >
사업공고	'24. 4월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4. 5월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평가 및 선정	'24. 5월중	-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24. 6월중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종료 후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항목

□ 평가항목

구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수행역량 및 사업실적(30)	○ 수행기관(참여인력 포함)의 수행역량 및 준비정도	15
	○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추진 실적	15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4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 사업 추진전략의 차별성 및 타당성	20
운영계획 및 성공가능성(30)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 수행체계 및 추진일정의 효율성	10
	○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5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본사, 지사 등 전북지역 내 소재지를 보유한 주관연구개발기관(2점)

- * 사업자등록증 등 공인된 서류를 통해 가점사항을 증빙해야하며 사업신청시 가점사항을 신청·증빙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함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공고일 기준 본사, 지사 등 전북지역 내에 소재지를 보유한 경우(2점)

* 사업자등록증 등 공인된 서류를 통해 가점사항을 증빙해야 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

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li style="padding-left: 20px;">*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규정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4. 04. 19.(금) ~ 2024. 05. 20.(월)
- 접수기간 : 2024. 05. 13(월) ~ 2024. 05. 20(월),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	○	○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	○	○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	○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	○	○	PDF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	○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5호	○	○	○	PDF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6호	○	○	○	PDF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등)	서식 7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PDF
1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서식 8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PDF
13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9호	○	○	○	엑셀(Excel)
14	우대사항 확인서(가점 증빙포함)	서식 10호	○ (해당시)	-	-	PDF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6. 기타 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성과 지원내용 및 성과분석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요청시 사업수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특구 중심 혁신주체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지역주도 자생적 혁신생태계 구축 및 성장동력 확보

□ 사업내용

- 전북특구 내 혁신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공동 협력과제 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한 특구 생태계 발전 도모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사업비 120백만원 (1개 이내 단독 또는 컨소시엄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네트워크 운영, 국책사업 발굴 기획 등의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컨소시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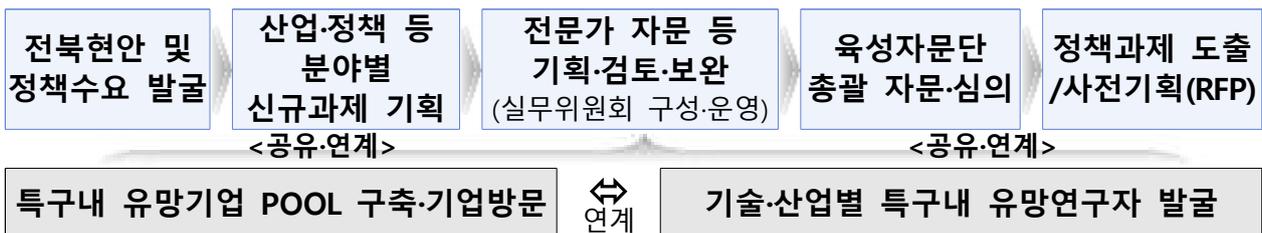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관련분야 업무경력 최소 5년 이상으로함, 참여 인력은 최소 3인 이상(단순 사무직 제외)로 하되, 최소 2인의 참여율의 합이 최소 5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협약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INNO JB 지역통합 네트워크 프로세스》



- **(육성자문단 운영)** 전북지역 지·산·학·연 오피니언 리더 중심 네트워크를 통해 특구 발전을 위한 아젠다 발굴 및 발전방향 논의 등
 - **(기업·기관 방문)** 정보교류 및 신규정책에 따른 협력사업 참여 등을 위해 육성자문단 참여기관, 특구기업, 국내·외 협력기관 등 방문 추진
- **(과제기획)** 전문가 자문, 지자체 수요조사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수요기반, 미래먹거리 준비를 위한 프로젝트 기획 → 전문가 자문(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과제 기획

◆ (국책사업 프로젝트) 전북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특구간 협력프로그램 기획, 기술사업화 기반 지원체계,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아이템 도출 및 사전기획 등
◆ (전북특구 미래산업 도출) 정부정책(국정과제), 지역수요 및 현안, 기업/연구 인프라 기반 과제기획 및 협력구조 구상을 통한 미래산업 사업화과제 도출 및 기획 등

* 상기(안)은 예시이며 전북특구와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 / 기획된 프로젝트는 성격에 따라 특구과제, 지역사업, 국책과제 등으로 후속연계를 추진해야함

□ 핵심 성과목표

No	성과목표	성과 지표	목표
1	과제기획	◦ 수요에 기반한 정책·인프라 등 국책과제 기획	4건
2	육성자문단 네트워크	◦ 포럼, 세미나 등 지산학연 오피니언 리더중심 네트워크 기획·운영	3회 이상
3	유망기업(기관) 방문 및 후속연계	◦ 특구내 국가전략기술 유망기업을 선별 방문	2회 이상
		◦ 컨설팅을 통한 특구사업 및 타과제사업 연계	2건 이상
4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분야별 과제를 기획, 검토할 수 있는 전북도 내외 전문가 실무 워킹그룹 구성 운영	3회 이상
5	홍보 활동	◦ 유망기업, 정책과제기획, 육성자문단 네트워크 등 대내외 언론 등 기획 홍보	2회 이상

* 공고문에 제시된 목표 이외의 수행기관의 역량에 따라 추가 목표를 제시

□ 보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전북특자도 보조금 지원

-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참여인력에 한하여 현금 인건비 지급 인정
-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비율은 보조금의 5% 이내 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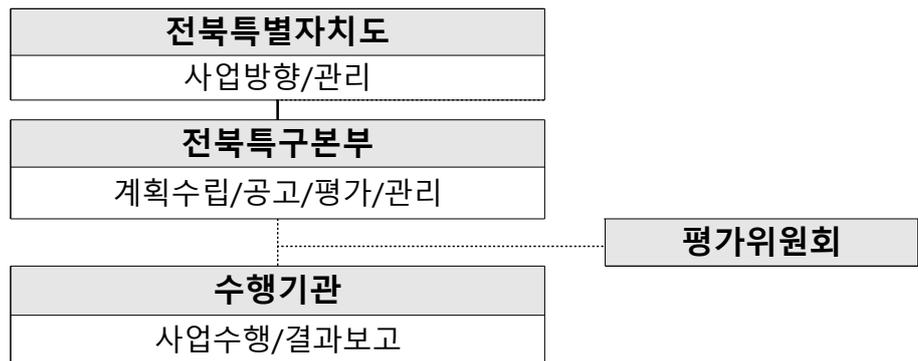
□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등
- (평가위원회) 선정·결과평가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 추진절차 및 일정

< 절차 >	< 일정 >	< 주요내용 >
사업공고	'24. 4월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4. 5월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평가 및 선정	'24. 5월중	-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24. 6월중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종료 후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전준비 (20점)	○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수립의 타당성	10%
	○ 사업의 이해도 및 사전준비 정도	10%
추진 전략 및 역량 (50점)	○ 사업 추진전략의 차별성	20%
	○ 운영계획의 체계화 및 구체성(네트워크 구성, 간사, 성과홍보 등)	20%
	○ 운영지원 능력(참여인력 수행역량, 네트워크 / 기획사업의 수행경험·실적 등)	10%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등 (30점)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절성	10%
	○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10%
	○ 파급효과 및 사후 관리 방안	10%
합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5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본사, 지사 등 전북지역 내 소재지를 보유한 주관연구개발기관(2점)

* 사업자등록증 등 공인된 서류를 통해 가점사항을 증빙해야하며 사업신청시 가점사항을 신청·증빙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

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규정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4. 04. 19.(금) ~ 2024. 05. 20.(월)
- 접수기간 : 2024. 05. 13(월) ~ 2024. 05. 20(월),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	○	○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	○	○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	○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	○	○	PDF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	○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5호	○	○	○	PDF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6호	○	○	○	PDF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7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PDF
13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8호	○	○	○	엑셀(Excel)
14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서식 9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PDF
15	우대사항 확인서(가점 증빙포함)	서식 10호	○ (해당시)	-	-	PDF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속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속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획경영실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강보라 연구원	063-905-9742	kangbr@innopolis.or.kr

6.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성과 지원내용 및 성과분석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요청시 사업수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테크비즈센터(전북TBC) 현장에 기업의 개발 기술·제품을 적용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을 통한 효과성 검증 및 사업화 제고

- ◆ (전북테크비즈센터) 전북 특화분야 육성과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건립된 산학연 교류협력 거점시설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 ◆ (실증) 기술개발 제품을 사업화를 목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운전을 통해 시제품의 성능을 검증

□ 사업내용

- 전북 도내 기업이 보유한 우수제품 및 기술을 전북테크비즈센터(전북TBC) 현장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80백만원(기업별 40백만원 내외 / 2개 기업 내외 선정)

* 해당과제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전북 보조금)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전북테크비즈센터 현장에 설치하여 실증테스트가 필요한 기술(제품)등을 보유한 전북 도내 소재 기업* 또는 컨소시엄

* 공고일 기준 본사, 지사, 공장 등이 전북 내에 소재한 국내 법인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 공인 된 서류를 통해 증빙해야 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협약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실증장소) 전북TBC 현장 실증 장소 제공
- (실증비용) 전북TBC 현장 실증 적용 기술·제품의 제작 및 개량비,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비,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 비용, 현장 입회 공인시험 테스트 비용 등 현장 적용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비 지원 항목 예시 》

구 분	지원 내용 예시
제품제작	◦ 실증 시제품을 제작·보완 개선비용, 기존제품 성능 품질개선 비용 등 전북TBC 현장설치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 제작 비용
설치/철거비	◦ 현장검증제품의 현장 설치 공사 용역 비용 ◦ 실증 완료에 따른 제품 철거/복원 비용(자체운송비 등 발생비용 불가)
시험·인증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시험·분석비용, 인증·인허가 비용 등 ◦ KOLAS(한국인정기구)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비용
계측장비 임차	◦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책임보험	◦ 지원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보험비용

※ 실증적용 제품 및 과제내용에 부합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내에서 추가 가능

- (실증확인서) 최종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한하여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실증확인서 발급

- 보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총 사업비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기관연구개발부담금의 10%이상* 현금부담)

과제지원금 (전북도 보조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총사업비 (보조금+민간부담금)
	현물	현금	
40,000천원	12,000천원	1,340천원	53,340천원

* 중소기업 10퍼센트 이상, 중견기업 13퍼센트 이상, 대기업 15퍼센트 이상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 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 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현금 계상 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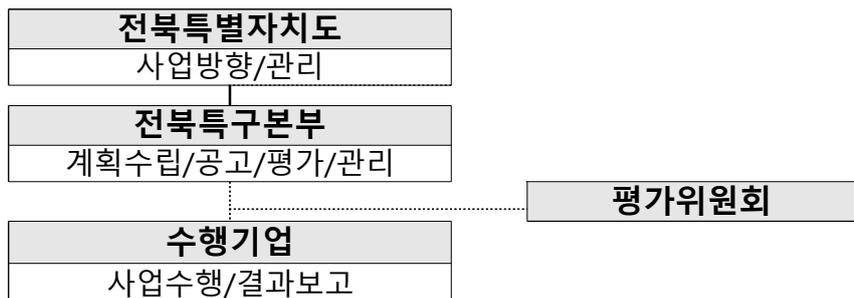
- 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 ② [별표 1]의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등
 - (평가위원회) 선정·결과평가
 - (수행기업) 전북TBC 실증 적용 제품개발, 현장설치, 성능검증·평가, 신뢰성 인증 등 과제 수행



□ 추진절차 및 일정

< 절차 >	< 일정 >	< 주요내용 >
사업공고	'24. 4월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4. 5월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평가 및 선정	'24. 5월중	-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24. 6월중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종료 후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 현장 실증지원의 필요성 및 적용 가능성	1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10%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10%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	10%
수행능력(30)	•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의 우수성	10%
	•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 과제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10%
사업성(30)	• 사업 성과의 우수성	10%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1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5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규정

□ 유의사항

-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라.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반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4. 04. 19.(금) ~ 2024. 05. 20.(월)
- 접수기간 : 2024. 05. 13(월) ~ 2024. 05. 20(월),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	○	○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	○	○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	○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	○	○	PDF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	○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5호	○	○	○	PDF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6호	○	○	○	PDF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7호	○	-	-	PDF
12	현물출자 약약서	서식 8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PDF
13 (필수)	(별지)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과제수행 현황)	서식 9호	○	-	-	PDF
14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호	○	○	○	엑셀(Excel)
15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서식 11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PDF

* 확인서 발급사이트 : 중소기업확인서(<https://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속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속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최진희 연구원	063-905-9743	skyhee10@innopolis.or.kr

6. 기타 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성과 지원내용 및 성과분석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요청시 사업수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